

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43
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. 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사회교육시설을 청주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신입생 확보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청주지역의 대학홍보거점 확보
- 타대학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립대학 이미지 구축
- 적극적인 사회교육원 운영으로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향후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기초마련

2. 주요골자

- 『사회교육원』 설치 관련조항 신설
 - 제6장에 “**사회교육원**” 신설
 - 충북과학대학부설 “사회교육원”을 둠 (안 제28조)
 - 충북과학대학부설 “사회교육원”의 기능 및 운영규정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29조)
 - 제6장 신설에 따른 “제7장” 및 “제8장” 조문정비

3. 개정근거 : 평생교육법제25조(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)제4항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6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7. 사전협의 및 승인결과 : 해당없음

- 평생교육법제25조(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)제4항의 규정에 의거
설치후 교육부에 보고

8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9. 기타 참고자료 : 교육부관련공문 사본1부

- ※ 평생81700-400(2000.3.31) 대학·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
운영개선 협조요청

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6장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6장 사회교육원

제28조(설치)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29조(기능 및 운영) 대학 부설 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
“제6장”을 “제7장” 으로 하고, “제28조”를 “제30조”로 한다

“제7장”을 “제8장” 으로 하고, “제29조를 “제31조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사회교육원</p> <p>제28조(설치)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</p> <p>제29조(기능 및 운영) 대학 부설 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규칙으로 정한다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감독</p> <p>제28조(감독 및 승인) 대학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과의 설치 및 폐기 2. 학생 정원의 증가 3. 재정에 관한 사항 4.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</p> <p>제30조(감독 및 승인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-- 3. ----- 4. ----- <p>-----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보 칙</p> <p>제29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기본법, 고등교육법,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장 ----</p> <p>제31조(준용규정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관계법령발췌

< 평생교육법 >

제25조 (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)

-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
- ②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,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
-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·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
- ④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
- ⑤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

< 평생교육법시행령 >

제43조(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)

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관인생략

교육부

우 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-6 정부중앙청사 전화 (02)720-3403 전송 (02)739-9170
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이상진 사무관 신영숙 담당자 김영복 (youngbo@moe.go.kr)

문서번호 평생 81700 - 400

시행일자 2000. 3. 31.

(경유)

공개여부 공개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선람	학장	기노	지시	✓ 재발우기	
접	일자	2000. 4. 3	결재	의장	이동현
수	번호	1738(231)		장관	김영복
처리과	담당자		공람	기	신영숙
심사자				심사일	

제목 대학·전문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운영개선 협조요청 E 2000. 3. 31

1. 우리부에서는 종전의 사회교육법 전문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제정·공포('99. 8. 31, 법률 제6003호)하였으며, 금년 3월부터 동 법을 시행함으로써 현행 학교 부설 평생(사회)교육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제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대학·전문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.

2. 이에 따라 동 평생(사회)교육원 운영개선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 대학(교)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대학·전문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운영개선 내용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처 학 1~60 사학 1~211 대원 1~17 전 1~16 사전 1~146 기능대학

대학·전문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운영개선

I. 평생(사회)교육원 현황

1. 평생교육원 설치 목적

- 대학의 우수한 인적·물적자원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봉사
-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평생학습의 이념구현

2. 설치 현황 (2000.2월말 현재)

○ 설치대학 및 과정수

구 분	대 상 학교수 (A)	대학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설치현황			
		학교수	교육원수(B) (B/A, %)	설치과정수	정원
대 학 교	189	156	164 (86.8)	4,567	237,176
전문대학	177	102	102 (57.6)	1,618	59,391
합 계	366	258	266 (72.7)	6,185	296,567

○ 연도별 설치현황

구 분	'86-'90	'91-'95	'96	'97	'98	'99	2000.2월말	계
대 학 교	21	49	21	25	26	21	1	164
전문대학	2	11	11	15	30	25	8	102
계	23	60	32	40	56	46	9	266

II. 운영개선

1. 추진배경

종전의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제정·공포('99. 8. 31, 법률 제6003호)하였으며, 2000. 3월부터 동 법을 시행함에 따라 현행 대학/전문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설치·변경 신고제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변경

-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43조, 시행규칙 제19조-

2. 기본방향

- 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
- 동 교육원 설치·변경 행정절차 간소화(신고제 → 보고제)
 - D/B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·통계 관리 수준
 - 중·장기적으로는 대학과 D/B 서비스망을 직접 연결 추진

3. 운영개선 내용

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

· 평생학습의 이념구현 및 지역사회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(사회)교육원의 기본 설립취지에 맞게 대학 특성을 살려 총(학)장의 책임하에 설치·운영하도록 자율권 부여

○ 설치장소

- 학교시설 또는 공공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임대시설 사용 및 지나친 영리추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함

○ 설치과정

- 대학의 인적·물적(시설 및 장비)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개설학과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강좌로 운영토록 권장
- 교양강좌, 영어·컴퓨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좌 위주로 운영하되,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 또는 요구 반영

○ 정원

- 대학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정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

○ 학습비

- 비정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, 학습비는 실소요 경비를 반영 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학점단위로 징수토록 권장

○ 강사

- 대학 실정에 따라 소속대학 교수를 가급적 활용하되, 평생(사회)교육원 강의시수를 책임시수에 산입토록 권장

○ 시간제 등록 운영 등

- 대학내 성인 계속교육관련 업무(예, 시간제 등록생 모집, 학점관리 등)는 평생(사회)교육원에 일원화 운영 권장

□ 평생(사회)교육원 설치·변경 행정절차 간소화

대학/전문대학 부설 평생(사회)교육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, 동 교육원의 명칭, 소재지, 교육과정, 학습비 등을 변경한 경우 종전 신고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고 보고절차 간소화

- 동 평생교육원을 신규로 설치한 대학은 붙임의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및 동 교육원 D/B 구축용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보고

- 동 평생(사회)교육원을 기설치하여 운영중인 대학의 경우 변경사항 보고는 붙임의 동 교육원 D/B 구축용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년 2회 보고

- 보고시기

- 1차 보고 : 매년 4.10까지 (4월 1일 기준)
- 2차 보고 : 매년 10.10까지 (10월 1일 기준)

- 보고내용 : 교육원 명칭, 소재지, 교육과정, 학습비 등